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신림~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(1공구)]

- 점검일시 : 2018.06.04 (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윤원섭

<p>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</p> <p>- 갱구부 터파기 구간 근로자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임시 계단의 난간 강관 파이프 단부가 돌출되어 통행시 충돌, 찰림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CAP으로 보완 하기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(안전난간), 공통-2(작업발판및계단)</p>	
<p>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</p> <p>- 터널 갱구부 굴착작업이 진행중으로 지하에서 지층으로 근로자들이 이동시 안전하게 이동 하여 전도재해예방이 될수 있도록 가설경사로 등 가설통로를 확보하고 작업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</p> <p>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18 (가설통로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</p>	
<p>○ 전도재해 예방(토목부)</p> <p>- 현장에 야적중인 임시 철재 계단이 기울어져 있으므로 전도 등의 2차 사고 우려되니 견고히 적치가 되도록 처리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</p>	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갯구부 터파기 구간에 토류벽 설치중으로 근로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나 출입통제가 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출입통제를 위한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토목부)

- 현장에 자재 양중에 사용되는 슬링벨트가 마모가 진행중으로 양중시 위험 하오니 폐기 조치 바람.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II.낙하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

